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287호
2. 발 의 자 : 김동욱 의원
3. 발의일자 : 2023. 10. 10.
4. 회부일자 : 2023. 10. 23.

II. 제안이유

-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일명 ‘민식이법’)이 마련되었으나 오히려 이러한 가중처벌 하는 규정을 악용하여 어린 학생들이 도로에서 누워 있는 등 운전자에게 위협행위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도로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와 보행자 교통안전 수칙 등 어린이들에게 충분한 보행자 통행 보호와 관련된 교육을 강화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 어린이 안전교육에서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른 도로에서의 금지행위와 통학로에서 보행자 통행 및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수칙에 관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IV. 참고사항

1. 관계법규 : 「도로교통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10일 김동욱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287호로 발의되어 2023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장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에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금지행위와 통학로에서 보행자 통행 및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수칙에 관한 지도를 추가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지도(안 제4호)와 통학로에서 보행자 통행 및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수칙에 관한 지도(안 제5호)에 관한 교육을 교통안전교육의 범위에 추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는 금번 같은 회기에 제출된 의안번호 1285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조례」 상의 학생의 교통안전에 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 시킨 것입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일부 학생들의 스쿨존과 횡단보도 등에서 보인 위험한 행동을 예방하고¹⁾, 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인식부재를 학교내 안전교육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것인 바, 학생들에 대

1) 최근 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고교생으로 추정되는 두 청소년이 스쿨존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사진이 올라옴.
“‘민식이법 놀이’?... 스쿨존·횡단보도 드러누운 10대들”(연합뉴스, 2023.8.29.)
“스쿨존 30km 지키면 뭐하냐.. 기가 막힌 아이들 장난”(YTN, 2023.8.30.)

한 교통안전수칙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준법의식 함양과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없음”을 제출 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5379.,2023.10.27.)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 (2180-8263)	입법조사관	이성윤 (2180-8266)
----------	--------------------	-------	--------------------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7호, 2023. 4. 18., 일부개정]

-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등) ①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4.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6.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7. 그 밖에 시·도경찰청장이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행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안전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3호, 2021. 9. 24., 일부개정]

-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교육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5.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서 체험중심 교육활동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
 6. 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
- ② 삭제 <2015. 1. 20.>
-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 재난대비 훈련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병행하여 실시하되,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시행 2023. 11. 9.] [법률 제19605호, 2023. 8. 8., 일부개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상이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인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 같은 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제1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1. 성폭력 예방
- 1의2. 아동학대 예방
2.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